

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60일		
신청인	법인명				법인번호		
	대표자				전화번호		
	소재지	(본사) (사무소)					
시설 및 기술인력	시설	사무실(㎡)			창고(㎡)		
	기술인력	기술사	관리사	기사	산업기사	교육사	기타
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소방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2.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3. 국가기술자격증,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국가기술자격증 3.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	

처리절차										
신청서 작성 및 제출	→	접 수	→	검토 및 확인	→	결 재	→	시 행	→	지정서 발급
신청인				소방청						신청인
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										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
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전문 기술인력 현황

(뒤쪽)

[illegible]

비고: 구분란에는 분야(소방, 전기, 화공, 가스, 위험물, 건축, 교육훈련)를 기재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